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14. 3. 13.(목) 10:00~

조례안 심사 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 목 차 】

의 안 번 호	건 명	페이지
13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2
14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15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거창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2.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3.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재난 현장에서 지휘체계 혼선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재난 수습을 위해 재난현장 통합지휘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코자 함.

나. 주요내용

(1) 통합지휘소 설치요건 및 시기에 관하여 정함(안 제4조)

- 재난 발생 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통합대응이 필요한 경우 설치·운영
- 단, 유형별 재난규모에 따라 통합지휘소 설치·운영 의무화

(2) 통합지휘소의 구성 및 임무에 관하여 정함(안 제5조)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현장책임자로 통합지휘소를 구성·운영

- 업무지원을 위해 실무반을 둘 수 있으며, 재난현장 통합대응 업무 수행
- (3)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현장지휘관 지정(안 제7조)
 - 통합지휘소의 장(부군수)은 재난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현장지휘관을 지정
- (4) 단계별 재난현장 통합대응체계 등에 관하여 정함 (안 제8조 ~ 안 제21조)
 - 상황전파, 현장출동, 현장조치, 긴급복구 단계별 대응절차 및 임무 수행
- (5) 복구체계 전환 및 통합지휘소 철수에 관하여 정함 (안 제22조 ~ 안 제23조)
 - 재난현장 대응업무 종료 시 복구체계 전환을 위한 인력·장비 재배치
⇒ 복구활동 시작 시 통합지휘소 철수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13. 8. 6. 개정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르면 재난현장의 총괄·지휘를 위하여 시·군·구별로 재난현장 통합지휘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같은법 제16조 제5항에서 통합지휘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 지역내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재난안전 대책본부장이 재난현장을 총괄지휘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재난통합지휘소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재난에 대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상위법을 준용하여 재정하는 것으로서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2.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3.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2014년 농업발전기금 운용계획의 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거창군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 원금의 직접대출 방식 도입, 융자지원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1) 기금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함(안 제3조)

- 기금구성 목표액 200억원, 회계연도 마다 10억원 이상 출연 의무규정 삭제함

(2) 이차차액 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항 삭제함(안 제8조제3항제2호, 제12조)

(3) 융자조건 및 융자한도액을 변경함(안 제11조제1항·제2항)

- ① 운영자금의 융자한도액 변경(1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이하)

- ② 시설자금의 용자조건 변경(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4) 경과조치 및 적용례를 신설함(부칙 제2조, 제3조)

- ①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전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융자금의 이자차액 보전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 ② 용자기간의 적용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성립하는 융자금의 대출부터 적용한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개정조례안은 농업발전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기금
 원금의 직접대출 방식 도입과 용자지원 조건 변경에 관한 사항
 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써,
- 관련 형식이나 절차상 문제 및 상위법령 등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거창군 농업기계 임대은행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 2014. 2. 28.
- 나. 제출자 : 거창군수
- 다. 위원회 회부일자 : 2014. 2. 28.
- 라. 상정 및 의결일자 : 2014. 3. 7.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표준안 준용
- 농기계 임대료 하향조정
- 국민권익위원회의 농기계임대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준수

나. 주요내용

- (1) 농업인 수요조사를 통한 임대농기계 선정 등 명시(안 제6조제4항)
 - 임대수요가 확보되지 않거나 임대유형에 부적합한 기종 선정을 미연에 방지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기종 구입을 통한 예산낭비 방지 및 임대사업 효율성 증진 확보
- (2) 임대대상 범위를 확대함(안 제9조제3항)

- 경작지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뿐 아니라 인근 시군에 경작지가 있는 농업인까지 임대대상 확대

(3) 임대료를 하향조정하여 농업인 부담경감 시킴(안 별표)

- 농기계 구입가격이 1,000천원 미만인 경우 1일 임대료 : (현행) 1만원 ⇒ (개정) 5천원으로 하향조정

(4) 심의위원회 명문화(안 제19조 ~ 제22조)

- 농기계임대사업을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명문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이 개정 조례안은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이 공동으로 마련한 농기계임대사업설치운영 및 임대료 징수에 관한 조례안을 준용하고,
- 농기계 임대료를 하향조정하여 농업인의 부담 경감과 국민권의 위원회의 농기계 임대사업 제도개선 권고안 준수를 통해 임대농기계 이용율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 개정조례와 관련한 형식이나 체계상 문제점 및 상위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해당없음

6. 수정안 요지 : 해당없음

7. 심사 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